

제296회 정례회  
2010. 12. 24(금)

#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행 정 문 화 위 원 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0. 12. 24(금)  
행정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나. 제출일자 : 2010년 12월 3일
- 다. 회부일자 : 2010년 12월 9일
- 라. 상정일자 : 2010년 12월 15일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운영현)

### 가. 제안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업무이관 등 변동사항 반영
- 신규위임 대상사무 신설,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권한위임 사무 신설 : 3건
  -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에 관한사항(지정 등) : 2건(환경정책과)
  - 북부출장소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소내 전보 권 : 1건(총무과)
- 근거법령 전부(일부)개정에 따른 권한사항 변경(삭제) : 7건

- 보안림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1건) : 시도 → 시군
  - 마약관련 업무(4건) : 시도 → 시군, 시도→식약청
  - 의약품 제조업자의 영업소 등록(1건) : 시도 → 식약청
  - 당직의료기관의 지정(1건) : 시도 →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 조직개편 등에 따른 업무조정, 부서명칭 변경 등 : 74건
- 위임기관 추가 : 북부출장소
  - 사업소 명칭변경 : 종자사업소 → 농산사업소
  - 부서명칭 변경 : 8건
  - 소관부서 조정 : 64건
    - 미래산업과 →생활경제과(18건) : 에너지, 액화석유가스 관련 업무
    - 미래산업과 → 치수방재과(4건) : 승강기 관련업무
    - 보건정책과 → 식품의약품안전과(20건) : 한약사업, 마약관련 업무
    - 지역개발과 → 균형개발과(21건) :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사업 관련업무
    - 도로과 → 균형개발과(1건) :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근거법령 등 변경 : 26건
- 권한위임 범위 확대를 위한 자구 변경 1건(환경정책과)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신고 등에 관한 사항
    - 당초 :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안의 사업장 등 제외
    - 변경 : 당초 단서조항 삭제
  - 관련법령 제정 시행에 따른 근거법령 및 사무명 변경 : 7건 (산림녹지과)

- 보안림에 관한 사무 →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사무 (3건)
-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에 관한 사무 → 보호수 등에 관한 사무(3건)
- 산림병해충의 구제·예방에 대한 조치명령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명령(1건)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보호법
- 기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18건
  - 관계법령 개정 : 농산지원과 7건, 보건정책과 2건, 식품의약품안전과 3건
  - 자구수정 : 식품의약품안전과 6건

###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장용대)

#### 가. 개정취지

이번에 제출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업무이관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신규위임 대상사무의 신설,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권한위임 대상사무 신설 3건,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른 권한사항 변경 및 삭제 7건, 조직개편 등에 따른 업무조정, 부서명칭 변경 등 74건,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근거법령 등 정비 26건 등 총 110건의 업무를 조정·변경하는 것임.

이번 개정조례안은 권한위임 대상사무 신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 및 부서명칭 변경,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른 권한사항 변경, 관

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정비 등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 군수,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 소방서장, 충북도립대학총장, 자치연수원장,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 농산사업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 내수면연구소장 및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충북도립대학총장, 자치연수원장,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 농산사업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 내수면연구소장 및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임처리 금지) 시장, 군수,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 소방서장, 충북도립대학총장, 자치연수원장,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 농산사업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 내수면연구소장 및 북부출장소장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처리 할 수 없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세정과	1	·도세 징수유예	지방세법 제41조
	2	·도세 기한의 연장	같은법 제26조의 2
	3	·도세 결손처분	같은법 제30조의 3
	4	·도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 제7조
회계과	1	·은닉 도유재산 신고처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2	·도유 일반재산 관리 및 매각 (매각은 도의 사전승인을 득한 사항과 타 법률에 의한 손실협의 사항에 한함)	
사회복지 정책과	1	·사회복지법인의 자산운용 및 시설업무의 지도·감독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2	·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3	·재해구호에 대한 다음사항 가. 수용시설의 제공(응급가설주택 포함) 나. 급식 또는 식품, 의료, 침구, 학용품 기타 생활필수품의 급여 다. 의료 및 조산 라. 이재자의 구출 마. 이재주택의 응급수리 바. 생업에 필요한 자금, 기구 또는 자재의 급여나 대여 사. 생업알선 아. 장사	재해구호법 제5조
보건 정책과	1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의 자격증 반환, 회수, 환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1조
	2	·안마시술소의 청문 및 행정처분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9조
	3	·안마시술소에 대한 지도점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식품의약품안전과	1	·한약업사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허가	약사법 제45조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 53조, 88조
	2	·한약업사의 허가대장비치 및 허가증 교부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
	3	·한약업사 영업소 이전허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
	4	·의료기관 마약류관리자 지정 및 변경 지정, 지정서 교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내지 제12조
	5	·마약류취급자(관리자) 명부등재, 교부 · 재교부 (마약류 도매업자 제외)	같은법 제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6	·마약류취급자(관리자) 폐업, 휴업, 재개업 등 신고 수리(마약류도매업자 제외)	같은법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7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발행교부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8	·사고마약류 발생 및 처리사항 보고	같은법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9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신고 양도승인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10	·마약의 소매 보고	같은법 제2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11	·행정처분(마약류 도매업자 제외)	같은법 제4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12	·청문(마약류 도매업자 제외)	같은법 제45조
	13	·과징금 부과(징수)처분(마약류 도매업자 제외)	같은법 제4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14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같은법 제5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15	·몰수 마약류의 폐기 · 처분 등	같은법 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
생활경제과	1	·대부업 등록 및 관리 권한 가.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부 열람 나. 변경등록 다. 영업폐지 신고수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 같은법 제5조제1항 같은법 제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p>라. 대부업자에 대한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p> <p>마.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내용 통보</p> <p>바. 영업정지</p> <p>사. 대부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재확인 공고</p> <p>아. 등록취소 청문 및 행정처분 사전 통보</p> <p>자. 등록수수료 징수</p> <p>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처리</p>	<p>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p> <p>같은법 제12조제7항</p> <p>같은법 제13조제1항</p> <p>같은법 제13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p> <p>같은법 제13조제3항, 제4항</p> <p>같은법 제1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p> <p>같은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p>
	2	<p>·통신판매에 관한 업무</p> <p>가. 위반행위의 시정권고</p> <p>나. 과태료의 부과징수</p>	<p>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p> <p>같은법 제45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p>
	3	<p>·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 사업에 관한 권한</p> <p>가. 사업(변경) 허가</p> <p>나. 허가기준의 세부기준에 대한 제개정 및 폐지</p> <p>다. 사업휴지 등의 신고</p> <p>라. 지위승계 신고</p> <p>마. 허가의 취소 등</p> <p>바. 과징금 부과징수</p> <p>사.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사항</p> <p>아.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및 해임요구 등</p> <p>자. 청문</p> <p>차. 과태료 부과징수</p>	<p>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p> <p>같은법 제4조</p> <p>같은법 제7조</p> <p>같은법 제8조</p> <p>같은법 제9조</p> <p>같은법 제10조</p> <p>같은법 제12조</p> <p>같은법 제16조</p> <p>같은법 제40조</p> <p>같은법 제52조</p>
	4	<p>·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정명령</p>	<p>같은법 제34조</p>
	5	<p>·에너지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p> <p>가. 불합격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 조치</p> <p>나.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면제</p>	<p>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p> <p>같은법 제39조제6항</p>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6	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  라.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선임·해임·퇴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 한 자의 과태료 부과 징수  에너지 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에너지사용량 신고  나. 업무보고 및 에너지사용량의 신고이행에 관한 사항 검사  다. 에너지사용량의 신고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징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 같은법 제78조제4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1조제1항  같은법 제66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제 33조제 2항  같은법 제78조제4항
기업유치 지원과	1	일반산업단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다만,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일반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미래산업과	1, 2, 3	1. 전기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제한 명령  2. 계량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계량기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 등록변경, 등록의 취소, 사업정지, 청문 등 나. 계량기 검사 및 정기검사 면제, 정기검사의증인 다. 보고 및 검사 등 (계량기 제작업자 및 자체수리 사업자를 제외한다)  라. 개선명령 마. 부정계량기의 처리(계량기제작업자 및 자체수리 사업자를 제외한다)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계량기제작업자 및 자체수리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자율안전 확인대상 공산품,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 어린이 보호 포장 대상 공산품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개선·수거·파기명령 및 위해사실 공표와 교환·환불 또는 수리 등의 명령 등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전기사업법 제71조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38조및41조  같은법 제32조 및 제33조 같은법 제34조  같은법 제35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제51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제41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4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개선·수거·파기명령 및 위해사실 공표와 교환·환불 또는 수리 등의 명령 등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 8조 같은법 제20조 같은법 제28조
농업정책과	1	· 농촌정비사업중 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 또는 승인하는 사업 중 다음사항 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준공검사 나. 생산기반정비사업중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의 준공검사	농어촌정비법 제99조
농산지원과	1	· 방제비용 부담통지서의 교부	식물방역법 제37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1항
	2	· 농업기반시설의 폐지승인	농어촌정비법 제24조
	3	·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농업용수,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관한 다음사무 (단, 2개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 가. 사업시행인가 나. 사업시행인가 통지 및 고시 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	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어촌정비법 제9조
	4	· 다음규모의 환지계획의 인가·고시 및 통지 가. 시장·군수,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50ha 미만의 논 경지정리사업, 밭 기반 정비사업(단, 2개이상의 시군에 걸친 경우 제외) 나. 소규모(10ha미만) 개간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6조 농어촌정비법 제26조
	5	·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농어촌정비법 제17조
	6	· 도유재산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제20조
	7	· 도유재산 용도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원예유통식품과	1	· 농산물 원산지표시 등의 조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제1항
	2	·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법 제38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축산과	1	· 도축장외에서 도살·처리한 가축의 신고 수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
	2	·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및 관리 약사 변경 신고의 수리	약사법 제45조제2항,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20조
산림 녹지과	1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명령	산림보호법 제24조
	2	· 보호수 등에 관한 다음사무 가. 관리인지정 등 보호수 보호관리 나. 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다. 보호수에 대한 행위제한 및 토지의 매수, 교환 등	산림보호법 제13조
	3	· 종.묘생산업의 등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4	· 종.묘생산업의 등록 취소	같은법 제16조
	5	·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다음의 사무 (도유림의 경우 도지사 협의)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에 관한사무	산림보호법 제7조 산림보호법 제11조 산림보호법 제8조
	6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임용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
	7	· 간선임도 설치계획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8	· 군지역 또는 시의 읍·면지역 일반국도 및 지방도 가로수의 관리 (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제3조
문화 예술과	1	· 전통사찰의 다음 사항에 대한 허가 가.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나. 전통사찰 경내지에서 건조물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제2항 제1호 같은법 제9조제2항제2호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p>다. 전통사찰 경내지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녹지 및 도시자연공원에 위치한 경우 그 경내지 안에서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24조제1항, 제27조 제1항 및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하는 행위</p> <p>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마. 「산지관리법」 제5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경내지에서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p>	<p>전통사찰보존법 제9조 제2항제3호</p> <p>같은법 제9조제2항제4호</p> <p>같은법 제9조제2항제5호</p>
관 광 항공과	1	· 관광편의시설업(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 전용음식점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지정 및 변경	관광진흥법 제6조
환 경 정책과	1 2 3 4 5	<p>1 · 대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및 고시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도에서 설치하는 대기측정망은 제외)</p> <p>2 ·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p> <p>3 · 연료용 유류에 관한 다음 사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안의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 1·2종 사업장중 아스콘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시설에 국한될 경우 임범위에 포함)</p> <p>가.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명령</p> <p>나.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명령, 승인</p> <p>4 ·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다음사항</p> <p>가. 신고 및 변경신고</p> <p>나. 이행 또는 개선명령,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 등의 사용중지, 사용제한 명령</p> <p>5 ·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시설 신고 및 변경신고, 조치명령</p>	<p>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제5조</p> <p>같은법 제17조</p> <p>같은법 제41조제4항</p> <p>같은법 제42조</p> <p>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p> <p>대기환경보전법 제 43조제 1항 같은법 제43조제2항,제3항</p> <p>같은법 제44조제1항, 제2항, 제7항</p>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6	·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7	·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의 취소 등 행정처분	대기환경보전법 제69조
	8	· 보고 및 검사 등	같은법 제82조
	9	· 과태료의 부과 징수(단, 도 광역단속반에 의한 사항과 지방환경청장 및 유역환경청장의 권한 제외)	같은법 제94조
	10	· 방제조치의 이행명령, 대집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제4항
	11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채취, 서류·시설·장비 검사의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 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안의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1·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1·2종 사업장중 아스콘 제조 시설 및 일반보일러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 범위에 포함)	같은법 제68조
	12	· 토양환경보전법 위반행위조사확인, 과태료 납부 통보, 의견진술의 기회 제공 등 조치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13	· 폐기물관리 관련 다음사항 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포함) 적정 여부 판단 통보 및 허가(변경허가) 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명령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라.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수리 사.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아.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전산기록관련 자료요구 자. 폐기물 재활용신고 수리 차.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카. 청문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같은법 제27조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제32조제2항 같은법 제33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제40조 같은법 제45조 같은법 제46조 같은법 제48조 같은법 제61조 같은법 제68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p>파. 폐기물 보관량의 변경 및 보관·처리 기간의 연장승인</p> <p>하.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 및 시설의 승인·변경승인 및 통보</p> <p>거. 허가증의 재교부</p>	<p>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p> <p>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p> <p>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p>
	14	<p>·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공기질 유지기준 설정</p> <p>나.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등의 개선 명령</p> <p>다. 보고 및 검사</p> <p>라. 과태료 부과·징수</p>	<p>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p> <p>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p> <p>같은법 제13조</p> <p>같은법 제16조</p>
	15	<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다음 사항</p> <p>가. 건설폐기물의 임시 보관장소 (변경) 승인</p> <p>나.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포함) 적정여부 판단·통보 및 허가(변경허가)</p> <p>다.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승인</p> <p>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취소·영업 정지 및 과징금 부과·징수</p> <p>마.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및 신고</p> <p>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수리</p> <p>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p> <p>아. 의제처리를 위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p> <p>자.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및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수리</p>	<p>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같은법 제21조, 제22조</p> <p>같은법 제23조</p> <p>같은법 제25조, 제26조</p> <p>같은법 제27조</p> <p>같은법 제28조</p> <p>같은법 제29조</p> <p>같은법 제30조</p> <p>같은법 제31조, 제33조</p>
	16	<p>·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중 다음 사무</p>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가. 고탄연료제품 제조자의 공급계획서 및 공급변경계획서 접수에 관한 사무 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용연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고탄연료제품 사용신고서 접수에 관한 사무 다. 고탄연료제품 사용자의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 시 통보서 접수에 관한 사무 라.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고탄연료 제품 사용을 중지한 자가 다시 사용하려 할 경우, 시설의 개선내역, 다이옥신 검사 결과, 고탄연료 제품 사용계획서 접수에 관한 사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6 별표8 " " " " " "
수질관리과	1	· 먹는물 관리와 관련한 다음 사항 가.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는 제외)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2항
	2	· 수처리제 제조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변경등록 나. 영업의 휴업·폐업·재개업 등의 신고 수리 다. 영업허가 등의 제한 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 마. 품질검사를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 바. 출입·검사·수거 등 사. 지도 및 개선명령 아. 사업장 폐쇄 조치 등 자. 폐기처분 등 차.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카. 청문 타.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의 권한 파.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권한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2항 같은법 제21조 제6항 같은법 제24조 같은법 제25조 제3항 같은법 제41조 제2항 같은법 제42조 같은법 제45조 같은법 제46조 같은법 제47조 같은법 제48조 같은법 제50조 같은법 제51조 제1항,제3항 같은법 61조제2항 제3항 제4항
	3	· 유통식품관련사업장의 출입·검사·수거 등	먹는물관리법 제42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균 형 개발과	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내지 제5항
	2	·시장·군수의 사업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단, 용도지역 변경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함)	같은법 제30조, 제50조
	3	·기반시설중 다음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도시계획 위원회가 설치된 시군에 한함) 가. 도로(중로이하의 도로) 나. 주차장 다. 궤도 라. 삭도 마.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바.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사. 광장(중로 이하의 도로에 접한 광장) 아. 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 1만㎡미만의 주제 공원에 한함) 자. 공동구 차. 공공공지 카. 수도공급설비 타. 전기공급설비 파. 가스공급설비 하. 방송·통신시설 거. 시장 너. 열공급설비 더. 학교(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한함) 러. 운동장(종합운동장 제외) 머. 공공청사(국가 및 도 기관 청사는 제외) 버. 도서관 서. 문화시설 어. 연구시설 저. 사회복지시설 처. 공공직업훈련시설	같은법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커. 청소년 수련시설 터. 유수지 퍼. 방화설비 허. 저수지(댐 제외) 고. 방풍설비 노. 방수설비 도. 사방설비 로. 방조설비 모. 하수도 보. 도축장 소. 장례식장 오. 종합의료시설 조. 폐차장 초. 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 제외) 코. 폐기물처리시설 토. 수질오염방지시설 포. 하천(소하천에 한함) 호.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에 한함) 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누. 화장시설 두. 보안시설 루. 자연장지 무. 공동묘지	
	4	· 기존면적포함 15만㎡미만의 자연취락지구 개발 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7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5	· 기존면적포함 15만㎡미만의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계획의 결정 및 변경	같은법 제30조, 제49조, 제50조
	6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7	·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고시	같은법 제33조, 제48조, 제53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8	· 종전 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 개정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관한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
	9	·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수리, 준공 검사 및 준공 검사필증 교부, 공사 완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10	·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변경, 폐지 및 이행담보, 열람 및 고시	같은법 제88조부터 제91조
	11	· 행정처분 및 명령(시·군에 위임된 사무에 한함)	같은법 제133조
	12	· 행정청이 아닌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발계획변경중 도시개발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나.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고시 다.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및 고시 라.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협의 마.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수리 사.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행위 아.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협의 및 통지 자.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도시개발법 제4조 같은법 제9조 같은법 제17조, 제18조 같은법 제19조 같은법 제20조 같은법 제26조 같은법 제58조 같은법 제66조 같은법 제68조
	13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나. 선수금 승인 다. 준공검사 라.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보완 시공 등의 조치 마. 준공검사를 위한 협의 바.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25조 같은법 제50조 같은법 제51조 같은법 제52조 같은법 제53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4	·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소공원, 어린이공원, 1만 m <sup>2</sup> 미만의 주제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나.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변경포함)  다. 위의 가, 나 사무의 고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15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수리와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7조
도로과	1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권한  가. 도로점용 허가 및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무  나. 점용공사의 확인  다. 점용료의 징수  라. 점용료의 징수제한  마. 원상회복  바. 변상금의 징수  사. 수수료의 징수  아. 과태료 부과징수	도로법 제40조제1항 및 제64조  같은법 제40조제3항  같은법 제43조제1항  같은법 제44조  같은법 제45조  같은법 제80조의2  같은법 제77조의2  같은법 제86조의2
	2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접도구역 안에서 다음 행위금지에 관한 권한  가.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의 행위  다.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도로법 제50조제4항  같은법 제50조제4항  같은법 제50조제6항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3	<p>·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 및 접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권한</p> <p>가. 권리의무의 양도허가, 신고의 수리</p> <p>나. 권리의무의 상속신고의 수리</p> <p>다. 발기인으로부터의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p> <p>라.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p>	<p>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1항</p> <p>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p> <p>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2항</p> <p>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2항</p>
	4	<p>·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의 다음 각호의 사항</p> <p>가. 타 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p> <p>나.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p> <p>다. 도로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의 징수</p> <p>라.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 명령</p> <p>마.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p> <p>바. 도로에 관한 조사</p> <p>사. 통행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강제징수</p> <p>아. 도로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 (협의, 감정, 분할측량, 보상금지급, 잔여지 매입, 소유권 이전 등)</p> <p>자.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하기</p>	<p>도로법 제29조</p> <p>같은법 제31조</p> <p>같은법 제54조제1항</p> <p>도로법 제67조제1항</p> <p>같은법 제75조</p> <p>같은법 제76조의2</p> <p>같은법 제78조</p>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p> <p>도로법 제64조제2항,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p>
	5	<p>· 도유재산 용도폐지</p>	<p>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p>
	6	<p>·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p>	<p>같은법 제14조, 제20조</p>
교통물류과	1	<p>· 자동차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등록</p> <p>나.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 관리 및 교부나 열람신청의 처리 등</p>	<p>자동차저당법 제4조</p> <p>자동차관리법 제7조</p>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다. 자동차신규등록, 등록증교부 및 자동차 등록 번호판 부착봉인 등 라. 자동차변경·이전, 말소등록의 처리 및 수출 이행여부신고와 말소 사실증명서 교부 마. 자동차압류등록의 처리 바.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사.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 개선명령, 지정취소, 사업정지 명령 아. 임시운행허가 및 허가증, 번호판 교부와 반납처리 자.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처리 차.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운행 정지명령 및 임시검사명령 카.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경과의 통지 타.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8조 같은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같은법 제14조 같은법 제16조 같은법 제20조, 제21조 같은법 제27조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자동차등록령 제31조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기계조종사 신고의 수리 나. 조종사의 면허발급 및 면허증 재교부 다. 조종사 면허의 취소 및 정지 처분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 같은법 제26조 같은법 제28조
	3	건설기계등록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기계등록 및 등록증교부 나. 등록사항의 변경, 이전, 갱정처리 다. 등록말소 및 확인서교부 라. 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등·초본의 교부와 열람신청의 처리 마. 등록번호표의 반납 바. 식별곤란등록번호표의 재새김 명령등 사. 등록번호표제작사 지정 및 변경 신고 수리, 지정취소 아. 보고 및 검사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같은법 제3조, 제5조 같은법 제6조 같은법 제7조 같은법 제9조 같은법 제11조 같은법 제8조의2 같은법 제35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자.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신청 처리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차. 건설기계저당권 등록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카. 매매용건설기계의 신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
		타.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같은법 제34조의2
		파. 건설기계사업(대여, 매매업) 등록의 수리	같은법 제21조
		하. 건설기계사업의 변경신고 수리	같은법 제24조
	4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보고·검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5	· 자가용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승용·승합자동차의 사용제한 및 사용 금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나. 화물자동차사용신고, 변경신고, 폐지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
	6	·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및 효력정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7	· 자동차의 사용정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
	8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면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제1항
		나. 공사시행의 인가 등	같은법 제38조
		다. 공사의 완성	같은법 제38조제4항
		라. 사용개시	같은법 제39조
		마. 사용약관 인가	같은법 제40조
		바. 시설사용료 인가, 변경	같은법 제41조
		사. 터미널사업자의 준수사항위반 시정명령	같은법 제42조제3항
		아. 터미널의 관리	같은법 제42조
		자. 위치·규모·구조 설비의 변경	같은법 제43조
		차. 사업개선 명령	같은법 제44조
		카. 사용명령	같은법 제45조
		타. 사업의 양도양수 합병·상속 휴지 및 폐지	같은법 제48조
		파. 면허의 취소	같은법 제85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하. 과징금 처분 거. 청문 너.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조합설립 더. 조합의 정관규정 및 변경 러. 정관변경 등의 명령 머. 재정지원, 조합감독 버. 공사시행인가, 시설확인 시 관계 행정 기관장간의 협의 및 통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같은법 제86조 같은법 제53조 같은법 제54조 같은법 제56조 같은법 제50조, 제57조 같은법 제47조제3항, 제4항
	9	자동차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 신고처리 나.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 허가 다. 임대 자가용 화물 자동차반환 신고처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같은법 제56조 같은법 제56조
	10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등록 나. 대여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다. 사업관리 위탁허가 라. 사업개선명령 마. 사업계획변경등록 바. 사업의 양도·양수신고 수리와 법인 합병신고 수리 사. 사업의 상속신고 수리 아. 사업의 휴지·폐지신고 수리 자. 사업등록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차. 청문 카. 과징금부과·징수 및 과징금운용계획 수립·시행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같은법 제31조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제33조 같은법 제10조제2항, 제35조 같은법 제14조제1항, 제3항, 제35조 같은법 제15조제1항, 제35조 같은법 제16조제2항, 제35조 같은법 제85조 같은법 제8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같은법 제94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치수 방재과	1	·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 등 신고·수리	하천법 제5조		
	2	· 지방하천의 관리상황 점검 및 유지·보수·시정 등 조치	같은법 제74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3	· 지방하천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작성한 하천시설 관리규정의 승인 및 변경승인과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같은법 제14조		
	4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고시(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같은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5	· 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으로 인한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부담 및 하천공사 시행	같은법 제29조		
	6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항	가.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법 제30조 제1항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같은법 제30조 제2항	
			다.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같은법 제30조 제10항	
			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예치 및 관리	같은법 제30조 제4항	
			마.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및 착수 신고 수리	같은법 제30조 제5항	
			바. 인가내용 고시	같은법 제30조 제6항	
			7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지방하천공사 준공인가 또는 검사의뢰, 유지·보수	같은법 제30조제7·8·9항
			8	·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방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시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같은법 제32조
9			· 지방하천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허가 및 처분 등 필요한 조치	하천법 제33조	
	가. 토지의 점용	같은법 제33조제1항제1호			
	나. 하천시설의 점용	같은법 제33조제1항제2호			
	다. 공작물 신축·개축·변경(다만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하천공사는 제외)	같은법 제33조제1항제3호			
라.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같은법 제33조제1항제4호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마.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바.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사.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아. 선박의 운항(2이상의 시군 관련사항 제외) 자. 스케이트장·유선장 또는 도선장을 설치하는 행위 차.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2이상의 시군 관련사항 제외) 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하천법 제33조제1항제5호 같은법 시행령 제 35조 제 1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5호 같은법 시행령 제 35조제1항 제6호
	10	·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내용 등의 고시(시장·군수가 허가하는 사항에 한한다)	하천법 제33조 제6항
	11	· 지방하천내 공작물 설치 및 토지굴착 등 하천점용 공사의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및 검사의뢰·준공검사·공사비예치	같은법 제33조 제8항
	12	· 지방하천의 점용등 허가신청자에 대한 기득 하천 사용자의 동의서의 징구 요구	같은법 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13	· 지방하천의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하천점용 공사의 대행 및 통지	같은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14	· 지방하천 점·사용허가의 실효·폐지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관리	같은법 제48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15	· 지방하천의 점용허가·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보고요구 및 사업장 등 출입·검사	같은법 제90조
	16	· 지방하천에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 명령·처분 (다만, 위임된 사항에 한함)	같은법 제69조
	17	·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조치 명령	같은법 제70조
	18	· 국가하천·지방하천의 유지관리 및 다른 공작물 등의 하천공사 시행·협의·통지·준공검사	같은법 제27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19	· 지방하천의 하천예정지 또는 홍수관리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허가 및 처분 등의 조치 가. 공작물의 신축·개축 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다. 죽목의 식재	하천법 제38조 제1항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20	· 지방하천 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에서 공작물 설치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인가·고시·검사의뢰 및 준공검사	하천법 제38조 제4항
	21	· 지방하천의 오염방지를 위한 낚시행위 등 금지지역 지정관리 및 공고	같은법 제46조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22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및 하천보전을 위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 및 공고·통지	같은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23	·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협의· 조사·통지	같은법 제76조
	24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토지·물건 등의 사용·수용	같은법 제78조
	25	· 하천관리원의 임명 등	같은법 제72조
	26	· 지방하천의 점용허가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감면	같은법 제89조
	27	· 법령위반자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른 허가·승인 취소 시 청문	같은법 제91조
	28	· 지방하천의 법령위반자의 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법 제98조
	29	· 하천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30	· 보상금액의 산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
	31	· 보상금 지급의 통지	같은법 시행령 제8조
	32	· 보상대상 결정 및 통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33	· 보상금의 공탁	같은법 제8조
	34	· 보상에 따른 이전등기	같은법 제9조
	35	·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20조
	36	· 도유재산 용도폐지	같은법 제11조
	37	·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8848호,2008.1.17> 제 2항
	38	·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같은법 제18조제2항
	39	·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한 검사	같은법 제21조제2항제2호제3항
	40	·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및 법원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등	같은법 제28조
건 축 디자인과	1	· 감리자의 지정 및 교체·보고·감리업무 지정 제한 등에 관한 권한(단, 국가·지방 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주택법 제24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2	· 건축물의 착공신고 및 연장승인 등에 관한 권한	주택법 제16조

[별표 2]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2항 관련)**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총무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사무처 내 전보권</li> <li>·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li> <li>지방자치법 제91조</li> </ul>

[별표 3]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3항 관련)**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방 호 구 조 과	1	·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관한 허가	
		가.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변경 허가 및 용도폐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제11조
		나.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 및 위험물 탱크 안전성능 시험	같은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다. 위험물제조소등의 승계신고의 수리	같은법 제10조
		라. 예방규정의 인가, 변경인가, 변경명령	같은법 제17조
		마.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취소, 사용 정지권	같은법 제12조
	2	· 소방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같은법 제6조
		다.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같은법 제7조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같은법 제9조
		마. 과징금 처분	같은법 제10조
	3	· 방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같은법 제16조
		다.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같은법 제17조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같은법 제19조
		마. 과징금 처분	같은법 제35조
	4	·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9조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같은법 제31조	
다.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같은법 제32조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같은법 제34조	
마. 과징금 처분		같은법 제35조	
5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같은법 제16조제3항	
	다. 등록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	같은법 제16조제5항	

[별표 4]

**직속기관,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4항 관련)**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위임대상 기 관	근거법령
총무과	1	·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학내 전보권 · 부교수이하 임용권	충북도립대학 총 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55조제5항
	2	· 5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원내 전보권	자치연수 원 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3	· 6급이하 지방공무원(지도사·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의 원내 전보권 · 5급 상당 지방연구원·지도관의 공무원의 원내 전보권 (연구소장 및 시험장장은 제외)	농업기술 원 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4	· 6급이하 지방공무원(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 공무원의 원내 전보권	보건환경 연구원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5	·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도로관리 사업소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6	· 6급이하 지방공무원(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산림환경 연구소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7	· 6급이하 지방공무원(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축산위생 연구소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8	·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농산사업 소 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9	·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청남대관리 사업소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10	· 6급이하 지방공무원(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내수면 연구소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11	·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북 부 출장소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b>제1조(목적)</b></p> <p>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 군수,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 소방서장 및 충북도립대학총장, 자치연수원장,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 종자사업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목적)</b></p> <p>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 군수,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 소방서장, 충북도립대학총장, 자치연수원장,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 농산사업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 내수면연구소장 및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권한위임사항)</b></p> <p>④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충북도립대학총장, 자치연수원장,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 종자사업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다.</p>	<p><b>제2조(권한위임사항)</b></p> <p>④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충북도립대학총장, 자치연수원장,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 농산사업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 내수면연구소장 및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다.</p>
<p><b>제5조(위임처리 금지)</b></p> <p>시장, 군수,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 소방서장 및 충북도립대학총장, 자치연수원장,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 종자사업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처리할 수 없다.</p>	<p><b>제5조(위임처리 금지)</b></p> <p>시장, 군수,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 소방서장, 충북도립대학총장, 자치연수원장,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 농산사업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 내수면연구소장 및 북부출장소장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처리 할 수 없다.</p>

## 관계법령 발췌

### ㉠ 공통사항

#### □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 환경정책과

#### □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한 운행차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점검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 중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를 지정 할 수 있다.

② ~ ④ < 생략 >

제69조(지정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제68조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전문정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정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68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정비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총 무 과

□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산림녹지과

□ 산림보호법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경관보호구역: 명승지·유적지·관광지·공원·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철도·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해일·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세부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 사유
  2. 구역의 구분
  3.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은 제4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⑥ 제4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할 때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산림보호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관리인 또는 산림보호관리협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그 보호·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의 이유로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한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받지 못하여 통상적으로 받게 될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 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 학교시설, 농로시설, 산업단지, 주요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 라. 농업·임업·어업·광업과 관련된 용도로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 마.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 사.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로 편입되는 경우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 나. 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3조(보호수의 지정·관리)**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보호수가 자라고 있는 토지의 매수 또는 교환 등에 관하여는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방제명령 등)** ① 산림소유자는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산림소유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수목(樹木)의 소유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 1. 산림병해충이 있는 수목이나 가지 또는 뿌리 등의 제거
- 2.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산림용 종묘, 베어낸 나무,

조경용 수목, 때, 토석 등의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

3. 산림병해충을 옮기거나 피해를 일으키는 곤충 등 동물의 방제나 병해충의 피해를 확산시키는 식물의 제거

4.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종묘·토양의 소독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산림용 종묘, 베어낸 나무, 조경용 수목 등의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동 제한 또는 사용 금지의 해제를 신청하면 산림병해충의 방제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산림병해충의 방제 완료의 인정, 이동 제한 또는 사용 금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조치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부칙

**제4조(보안림 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서 다음 표의 왼쪽 칸에 해당되는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중 같은 표 오른쪽 칸의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중복하여 지정된 산림은 같은 표 오른쪽 칸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4조(권한의 위임)** ①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권한을 산림청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공유림·사유림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산림청 소관인 국유림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고, 제2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제4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6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권한

2. 법 제10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권한

3.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권한

4.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평가에 관한 권한

- 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명령에 관한 권한
- 6.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고에 관한 권한

②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 보건정책과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휴일 또는 야간 그 밖에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응급환자의 응급의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종별·진료과목별 및 진료기간별로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응급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안마사·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준용규정) 안마사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로, "의료인"은 "안마사"로 보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안마시술소개설신고서의 처리 기간에는 제10조 후단에 따라 실제로 의견을 제출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면허등록대장 등에 관한 제5조
2. 면허증의 재발급에 관한 제6조
3. 면허증의 반환·회수·환부에 관한 제8조
4. 의료기관 개설신고에 관한 제25조
5.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제26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6. 「의료법」 제28조의 중앙회에 대한 의료법인 규정의 준용에 관한 제73조

##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의료법 시행령」과 「의료법 시행규칙」중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의료법 시행령」중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32조와 「의료법 시행규칙」중 제6조제2항, 제8조, 제14조제1호, 제15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30조, 제40조, 제47조, 제73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로 한다.

## ○ 식품의약품안전과

### □ 약 사 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① 의약품 제조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이하 "품목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①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약사법 시행규칙

제53조(한약업사의 허가신청) ① 법 제45조에 따라 한약업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약업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4조(한약업사의 허가대장과 허가증) 시·도지사는 제53조에 따라 한약업사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한약업사의 허가대장에 다음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허가번호와 허가연월일
2. 한약업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한약업사의 시험합격연월일
4. 영업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제57조(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 ① 한약업사가 그 영업소(이하 "한약방"이라 한

다)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한약방을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가 한의사·한약업사의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약방의 이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한약방의 이전허가를 한 경우에는 한약업사의 허가대장에 그 한약방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 한약업사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한약방의 이전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수수 등의 제한)** ③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다른 마약류 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류(제제를 제외한다)를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출입·검사와 수거)**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의 업무소·공장·창고·대마초 재배지·약국·조제장소 그 밖에 마약류 및 원료물질에 관계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구조·설비·업무현황·기록서류·의약품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시험용으로 필요한 최소분량에 한하여 마약류·원료물질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 및 물건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폐기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마약류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못한 마약류 및 제16조·제17조·제18조·제21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판매·저장 또는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불량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공중위생상의 위해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마약류취급자에게 명할 수 있다.

**제43조(업무보고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 및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허가관청은 이 법에 의한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또는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경우에는 그 취급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성분·처방 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허가목적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때

나.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때

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교부받지 아니한 때

라.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양도한 때

마. 제10조제1항에 따른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교환하지 아니하고 마약을 매매·수수한 때

바.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때

사. 제11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때

아. 제12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고마약류 등을 폐기한 때

자. 제14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광고한 때

차. 제1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저장한 때

카. 제16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봉합하지 아니하거나 봉합하지 아니한 마약류를 수수한 때

타. 제17조를 위반하여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때

파. 제19조·제23조·제25조·제27조 및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하. 제20조·제22조 및 제26조를 위반하여 판매한 때

거. 제32조를 위반하여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때 및 처방전을 작성·비치·보존하지 아니한 때

너. 제33조를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때



다.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때

러. 대마재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계속하여 대마초를 재배하지 아니한 때

며. 제38조에 따른 관리의무를 위반한 때

버. 제4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질문·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서. 제50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2.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가. 제6조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

나. 제18조제2항·제21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다. 제1호가목·카목·버목 또는 제9조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때

라. 제1호사목·아목·너목 또는 제9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마. 마약의 유효성분 함량이나 제제상 손실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제45조(청문)** 허가관청은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과징금처분)** ①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자에 대하여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는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며,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